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 6. 1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개정안은 2022.6.3.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6.3.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임(의안번호 : 2744호).

2. 제안이유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경조사 휴가 “1일”을 신설함.(안 별표 3)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함.(안 별표 3)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5일”로 함.
(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별표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생략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 단서 조항은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특별휴가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에 따라 양천구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 내용

○ 별표 결혼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신설하여 특별 휴가 1일.
사망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2일에서 3일로 1일 추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에서 5일로 3일 추가하여 총 5일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에서 단서 조항으로 조례에 위임한 바를 따라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라 보고 드립니다.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⑬ (생 략)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